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안	2004
번호	- 11

제출년월일 : 2004. 4.

제 출 자 : 김제시장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사무가 시군 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안 제2조)
- 나. 미술장식품의 설치 (안 제3조)
- 다. 미술장식품의 설치신청·심의 (안 제4조)
- 라.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안 제5조)
- 마.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안 제6조)
- 바.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안 제7조)
- 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구성 등 (안 제8조 내지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1조
-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
- 나. 입법예고(2003. 9. 16 ~ 10. 6) 실시결과 : 특기사항 없음.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3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신청·심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후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김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천분의 5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천분의 1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평가 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자치행정국장·산업개발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계획전문가·조형예술·건축·미술·도시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